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 서

《 의안번호 제1732호 》

- 의안번호 제 1732 호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,
 - 알기 어려웠던 공영주차장의 ‘주차금지 체계’를 개별지점 단위 5개 금지에서 지하철역 반경 기준의 3개 금지로 변경하고, 주차장별 요금차등화를 위해 해당 금지 요금에 지역별 공시지가 변수 적용 규정을 신설하며,
 -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, 시장이 주차요금을 조정 (할인) 할 수 있는 범위를 50% 이내에서 80%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
 - 또한, 주차금지체계 개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인 기존 1금지 지역(4대문 주변지역 등 10개 지역)을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대상지역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

- 승용차 대체수단인 대중교통 이용환경 변화에 대응하고, 20년이상 장기간 고정되어 있던 공영주차장 주차금지체제를 개편하여 주차수요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 제출된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2020. 9. 8.

도시교통실장 황 보 연